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5. 8. 28.(목)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안미자 의원 외 7명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안미자 의원 외 7명
- 제안일 : 2025. 8. 14.
- 회부일 : 2025. 8. 18. (의안번호 : 25-77)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포구 맞춤형 주민 밀착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타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5조 및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8조, 제34조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2025. 8. 6. ~ 8. 12. (제출된 의견 없음)

○ 참고자료 첨부

5. 검토보고

① 조례의 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안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포구 맞춤형 주민 밀착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② 주요 제정내용

○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 목적: 마포구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 정의: 자치경찰사무로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업무, 자치경찰사무 협력 공무원에 대한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구청장이 지정한 구청 소속 공무원.

○ 제3조 (구청장의 책무)

-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구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 함.

○ 제5조 (기본계획 수립)

- 매년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가능,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서울마포경찰서장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 제6조 (지원사업 범위)

- 생활안전: 순찰, 범죄예방시설, 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 여성·청소년: 실종 예방, 성폭력 방지, 청소년 선도 보호,
- 교통안전: 시설 설치·관리, 통행 허가, 교통법규 단속, 범죄
-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 피해자 지원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사업.

○ 제7조 (협력체계 구축)

-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가능.
- 필요 시 협력 공무원 지정.
- 관계기관 간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 의무 규정.

○ 제8조 (실무협의회 운영)

-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
-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사업 추진방안
-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지원사항

- 필요시 구청장이 지정한 추가 안건
- 기존 지역치안협의회를 실무협의회로 대신 운영 가능.

③ 제정내용 검토

○ 제정의 필요성, 타당성

- 마포구의 지역 특성과 치안 수요를 고려할 때,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은 필수적이고, 마포구청과 경찰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마포구 맞춤형 범죄예방 및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문제점 및 우려 사항

- 조례안에서 명시한 각종 지원사업의 범위가 넓어, 예산 부족 시 실효성 저하 우려.
- 기존 ‘지역치안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행정 비효율성 우려.
- 기본계획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고 규정했지만, 실제 참여 구조가 미흡할 수 있음.

④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 (서울특별시) '21.5.20.,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당해 자치경찰제를 시행함.

- (서울시 자치구) 지난 7월 3일 도봉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치경찰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뒤이어 14일 금천구도 제정함.
- 강남구의 경우 지난 6월, 자치경찰 지원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지역 치안이 충분히 안정되어 있다는 점, 자치경찰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소관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것의 적절성 등의 의견으로 부결된 바 있음.
- (전국 자치구) 전남, 부산, 광주 자치구들은 모두 자치경찰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강원, 전북, 경남, 경기, 인천 등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임.
- 해운대구는 '25년도 “자치경찰사무 지원”으로 실제 5백만 원을 지원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운영이 법령상 시·도에 위임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해석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본질적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인력 운용 및 예산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자치경찰제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서울시 내 경찰서와 자치구에 「자치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하였으며, 이는 기초단위의 참여 확대를 통한 치안 서비스 질 향상, 구민 안전

보장 및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적·정책적으로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행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 협력체계의 실효성,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충분히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 기초단위 자치구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 (질 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는 내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증평군의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
- (답 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이 때 ‘그 사무’란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는 소관 자치사무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이러한 소관사무 원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경우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먼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하고(제1항),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경찰법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사무가 기본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협력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임

니다. 또한, 경찰법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자치경찰사무가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사무에 대해 별도로 소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면, 자치경찰사무의 본질적인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